

##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 중요도에 관한 연구

홍 덕 용\*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 대상의 범위와 방법
  - 3) 선행연구
2.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개요
  - 1) 시청각기록물의 개념
  - 2)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특수성
  - 3)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3.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설계
  - 1)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 도출
  - 2)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 도출
4.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1) 조사방법
  - 2) AHP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전체 중요도 분석
  - 3) AHP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집단별 중요도 분석
5. 결론

---

\* 부산대학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졸업(igre@nate.com).

## [국문초록]

최근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시청각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실무를 통해 얻어진 평가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식별성>, <출처/관리이력>, <원질서>를 비롯한 총 26개의 평가요소가 도출하였고 각 요소별 특성에 맞게 정의하여 평가영역으로 범주화시켰다. 이렇게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을 실제로 설계하였고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평가영역의 순위는 ‘맥락영역’의 중요도가 0.304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평가요소간의 중요도 순위는 종합가중치가 0.101인 <주제>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물리적 상태>, <기관내이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시청각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평가, AHP분석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청각기록물은 생동감 있는 현장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당대의 문화적·사회적·역사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2010년

에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요행사 등에 대한 동영상 기록물 생산이 의무화(안 제19조 2항)되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기록물의 생산·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생산물을 반드시 생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sup>1)</sup> 이렇게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시청각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기록물평가업무는 기관의 업무와 기능에서 기록물이 지닌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물이 생성된 배경과 맥락으로서의 기능이 지닌 중요도를 기반으로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록물평가업무는 개별 시청각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청각기록물의 매체 별 특성을 반영한 국내·외 시청각기록물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평가요소들을 도출하고 국내 기록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함으로써 시청각기록물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대상의 범위와 방법

시청각기록물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관리표준을 살펴보았고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의 평가기준의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시청각기록물 안에 포함되는 모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5. 4] 제22151호 제19조.

든 매체의 평가요소들을 모두 취합하여 요소별 특성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요소들을 상위 평가영역으로 범주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범주화된 평가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였다.

설문대상은 현용가치를 지닌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는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록연구사 96명을 선정하여 51부를 회수하였다. 다음으로 영구가치를 지닌 시청각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의 평가업무담당 기록연구사들과 시청각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사서 14명을 선정하여 11부를 회수하였다.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에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는 각 평가 기준의 상위계층에 있는 평가영역과 하위계층인 평가요소들과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종합가중치를 분석할 수 있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분석방법으로 수행하였다.<sup>2)</sup> 회수된 설문지를 중심으로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e)이 0.1 이하인 응답자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AHP분석의 전용 솔루션인 Expert Choice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선행연구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반기록물의 평가기준과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와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다.

---

2) “AHP분석은 T. L. Saaty(1972)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목표 값들 사이의 중요(weight)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해서 다수의 목표, 평가기준, 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며 해결하는데 적합한 통계적 분석 기법이다.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기준의 정리’, ‘Model 계층도 작성’, ‘종합 가중치 결정과 대체안의 비교’ 등의 분야에서 유용한 통계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조근태·조용근·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사, 2003, 4쪽).

일반기록물 평가기준과 지표를 제시한 연구로 전경선, 천권주, 김효민의 연구가 있다. 전경선(2007)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행 평가기준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물 평가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모형을 각 모듈별로 개발하여 세부적인 평가문항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 모듈의 각 평가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모듈별 평가지침과 평가 요소 및 평가절차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평가모형으로 평가유형, 평가목표,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3)</sup> 천권주, 김효민(2010)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영역을 세분화하고 상·중·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Leary, Johnson, Kula, Charbonneau, 배은경의 연구가 있다. Leary(1985)는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관한 UNESCO의 보고서에서 아키비스트, 박물관 큐레이터를 비롯한 정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기록물의 기록학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적 가치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복잡성과 이론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기록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청각기록물의 각 매체별 평가는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또한 Leary(1989)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로 연대, 주제, 유일성, 식별성, 양, 질, 접근성, 생산자를 제시하였다.<sup>6)</sup> Johnson(1993)

3) 전경선, 「한국 공공기관의 기록물 평가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4) 천권주·김효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한국기록학회, 2010.

5) W. H. Leary, *The Archival Appraisal of Photographs :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1985.

은 시청각기록물은 다양하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반기록물과는 다른 평가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Kula(2003)는 Jenkinson, Schellenberg, Boles, Young, Eastwood, Duranti의 이론을 토대로 동영상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 증거, 정보가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렇게 하여 동영상기록물의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동영상기록물의 요소에는 수집된 연대, 그 당시의 여론상황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를 통해 동영상기록물의 보존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8)</sup> Charbonneau(2005)는 Leary의 연구와 퀘백의 국립 아카이브즈와 캐나다 아카이브즈 협회의 평가요소를 참고로 하여 사진의 평가에 관련된 요소들을 제시했다. Charbonneau는 수집정책, 평가기준, 프레임워크 등 아키비스트가 개발하고 사용하는 도구들의 대부분은 높은 레벨의 품이나 시리즈에 특히 잘 맞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복잡적이라 사진의 평가를 위해서 제공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배은경(2008)은 사진기록만의 특징을 살려 일반기록물과 특징의 차이점을 통해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 사진기록의 평가영역으로 기능영역, 내용영역, 예술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기록물 평가와는 차별을 두었으며, 사진기록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 내용, 형태, 이용 및 비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문헌연구만을 토대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sup>10)</sup>

이상과 같이 국내의 경우는 일반기록물의 평가기준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해외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중요성을 파

---

6) W. H. Lea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7) Steve Johnson, *Appraisal of Audiovisual Materials*, Behavioral Image Inc, 1993.

8) Sam Kula, *Appraising Moving Images*, The Scarecrow Press Inc., 2003.

9) N. Charbonneau,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Archivaria* 59, 2005.

10) 배은경,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악하여 시청각기록물의 매체별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평가기준 및 요소를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였고 해외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의 개별적인 평가요소만을 제시할 뿐 체계화시키고 범주화된 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개요

### 1) 시청각기록물의 개념

시청각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청각기록물의 용어정의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3조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에서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진·필름·테이프·비디오·음반·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1)</sup> 기록관리학용어사전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을 매체에 상관없이 소리나 영상을 획득하거나 전송·재생산한 기록이며 사진, 필름, 녹음,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SAA용어집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은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5. 4] 제22151호 제23조.

12) 최정태, 『기록관리학용어사전』, 한울아카데미, 2005, 153~154쪽.

음성과 그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세스와 제재들은 사운드와 이미지 캡처, 기록, 전송, 또는 재현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시청각기록물은 필름기록물, 사진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로 포맷에 관계없이 시각과 청각형태의 모든 기록물”을 의미한다.<sup>13)</sup>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관리 실무매뉴얼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몸짓 및 목소리 톤 등 당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성을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매체에 수록한 것으로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영화필름,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말한다.<sup>14)</sup>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시청각기록물은 구성형식에 의해 사진·필름류와 녹음·동영상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진·필름류에는 사진, 필름, 슬라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녹음·동영상류에는 오디오와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 <표 1>은 시청각기록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시청각기록물의 범위

구분		종류
사진필름류	사진	흑백사진, 천연색 사진
	필름	흑백·천연색 영화필름 및 사진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영상·비영상 슬라이드
녹음동영상류	오디오	녹음테이프, 카세트, 녹음테이프 릴, 녹음테이프 카트리지,
	비디오	음반SP, 음반LP, 음반CD, 음반D, 음반DAT 등

출전 : 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2003, 63쪽.

13)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Chicago, 2004.

14)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 매뉴얼』, 국가기록원, 20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청각기록물은 각급 기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성을 다양한 매체에 수록한 것으로 사진·필름, 오디오, 비디오, CD, DVD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 2) 시청각기록물 평가의 특수성

과거에는 기록물의 종류가 손으로 쓰인 종이기록물이 대부분이었고 그 양도 적어 기록물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동영상, 음성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발명되면서 기록물의 생산량과 종류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 형태를 가진 시청각기록물들은 물리적 및 지적 성질에 있어서도 각각의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해당 기록물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제반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chellenberg는 “조직과 단체가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기록물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이미지기록은 사진가나 아티스트들이 예술과 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미지기록은 생산자의 예술적인 감정을 촉진하여 전시하기 위해 생산되므로 조직의 기능과 출처보다는 인물, 사물, 현상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예술성과 연관된다.<sup>15)</sup>

Kula는 사진기록물과 동영상기록물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는데, “사진기록물의 이미지경우는 그 자체로는 증거적 가치가 적다”고 하였다. 조직이나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진기록물 없이도 일반기록물, 즉 제작 파일, 재무기록, 인사기록, 계약서 같은 것으로도 업무의 증거적 가치가

---

15) T. R. Schellenberg, *The Management of Archiv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pp. 325~326.

충분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동영상기록물은 사진기록물과는 다르게 동영상 자체만으로도 조직이나 단체의 정보적 가치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sup>16)</sup>

Leary도 Kula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업무를 밝혀주는 사진기록물의 이미지보다는 일반기록물이 증거적 가치가 많다”고 하였다. 사진기록물은 조직의 증거는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증거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기록물이라는 것이다.<sup>17)</sup>

Schwartz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실이라고 인식하지만, 기계로 제작된 이미지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계로 제작된 이미지기록들이 지닌 증거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가 기계로 제작된 이미지를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재현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보이는 이미지의 내용만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18)</sup>

Boles는 “시청각기록물은 일반기록물과는 근본적으로 매체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방법에도 차이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되는 형식과 보관되는 매체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일반문서와 같은 평가요소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청각기록물의 매체를 보존·보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록관의 예산이 평가업무 진행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sup>19)</sup>

Ham은 “시청각기록물 같은 특수기록(special classes of records)을 평가

---

16) Sam Kula, *The Archival Appraisal of Moving Image: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1983, p. 26.

17) W. H. Leary, *Managing Audio-Visual Arch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19.

18) J. M. Schwartz,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s”, *Archivaria* 40, 1995, pp. 50~54.

19) F. Boles,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pp. 132~135.

할 때는 기록의 정보내용뿐만 아니라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술적인 문제에는 물리적 안정성, 정보 이전의 가능성, 기록 세대, 기술 의존성, 정보 인식 및 검색 방법인 도큐멘테이션 정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정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부가정보의 가치, 정보 형태, 진본 사본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0)</sup>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는 내용이나 예술성뿐 만 아니라 시청각기록물의 기능적인 배경, 정보전달의 방식, 물리적 형태와 같은 시청각기록물의 매체의 특성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3)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많은 학자들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론적인 흐름에 따라 제안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청각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평가요소를 제시한 기록학계의 연구로는 Schuurisma(1974), Kula(1983), Peterson(1984), Long(1984), Vogt-O'Connor(1984), Hedstrom(1984), Leary(1991), Johnson(1993), Charbonneau(2005)의 연구가 있다.

Schuurisma(1974)은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데이터구성 요소정보(출처, 정체성, 정리, 이용자 접근, 완전성)에 대한 설명자료, 주제와 부가정보, 편집본과 완성도에 대한 평가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1)</sup>

첫째, 시청각기록물의 출처, 정체성, 정리, 이용자 접근, 완전성과 관

---

20) F. G. Ham, *Glossary of Terms Related to the Archiving of Audiovisual Materials*, UNESCO, 2001, pp. 60~64.

21) Rolf L. Schuurisma, “Principles of Selection”, *Photographic Bulletin* 9, 1974, pp. 7~8.

련한 기록 생산자나 이용자에 관한 정보들이 평가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이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시청각기록물도 생산단계부터 기술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었을 경우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확인 및 정리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드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 및 보존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둘째, 시청각기록물속에 실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만큼 희소한지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시청각기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주제뿐만 아니라 배경에서 볼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청각기록물은 주요 내용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축물의 내부전경, 행사 참가자들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같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한 사투리를 비롯한 부수적인 주변 환경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셋째, 시청각기록물의 편집본에 대한 평가요소도 필요하다. 시청각기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원본이 편집되어 새로운 편집본으로 생산되는 데, 평가 시 최종버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집본을 각각 평가할 필요가 있다.

Kula(1983)는 “동영상기록물의 평가요소로 관련된 설명자료, 기관목적, 생산자 의견, 예술성, 형태, 평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2)</sup>

아키비스트들의 동영상기록물의 평가업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첨부된 설명자료나 매뉴얼 등인데, 이는 시청각기록물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한다. 첨부된 설명자료에는 스크립트(초안, 대본사진, 최종편집본), 스틸(필름과 비디오의 장면, 홍보 사진), 생산파일(서신, 계약서, 계획서), 리뷰보고서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관의 목적에 관한 요소는 기관을 연구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동영상기록물을 평가하기 전에 고

---

22) Sam Kula, 앞의 책, 1983, p. 26.

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용에 관한 요소는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생산되어 이용되는 비용과 평가 시 드는 비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평가 비용과 이용비용 등이 기관의 예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Peterson(1984)은 “일반기록물의 평가요소에는 정보내용이나 기록의 유일성에 관한 평가요소가 포함되어있지만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정보내용’에 대한 평가요소뿐만 아니라 ‘기술’(technical)적인 문제의 평가요소에 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23)</sup> 여기서 기술적인 평가요소에는 물리적 안정성 요소, 장기간의 실행가능성 요소, 오래된 매체로부터 새로운 매체로 정보를 이전하는 요소, 시청각기록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노후화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현재의 시청각기록물의 형태(form)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물리적 안정성 요소이다. 즉, 추가적인 보존처리(preservation treatment)를 수행하지 않고도 시청각기록물이 장시간에 걸쳐 영구기록물기관의 보존환경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기록의 진본성에 관련한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둘째, 시청각기록물의 정보가 보존과 이용을 위해 보다 오래된 매체로부터 새로운 매체로 이전될 필요가 있을 때, 기록물의 질적 저하를 확인하는 등의 기록의 무결성에 관한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중요한 시청각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체 형태하에서 보존하거나 이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지도 생각해야 한다. 셋째, 재생을 위해서 특별한 기술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의 기록물의 장기보존성에 관한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즉, 20세기 이전의 시청각기록물을 위한 재생 장치는 기술적 지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이

---

23) T. H. Peterson, “Archival Principles and Records of the New Technology”, *American Archivist* 47, 1984, pp. 383~393.

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기록매체도 발전하였다. 전자기록매체에 담기는 시청각기록물은 안정성과 편리성이 입증되었지만 훼손되었을 때 복원을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하드웨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보를 다른 매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재생장치와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는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

Hedstrom(1984)은 “시청각기록물은 세대별로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세대의 것일수록 시청각기록물의 이미지와 소리, 영상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sup>24)</sup> 여기서 세대는 파일이 생산되는 업데이트 주기 내에서의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업데이트 주기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파일이나 출력물은 ‘current-’, ‘son-’, ‘daughter-’세대라고 한다. 이 세대보다 먼저 생산된 출력물은 ‘first-’, ‘father-’, ‘mother-’세대라고 하며, 이보다 더 먼저 생성된 출력물은 ‘second-’, ‘grandfather-’, ‘grandmother-’세대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 의해서 아키비스트는 이미지와 영상의 질이 좋은 원본이나 원본 앞 세대의 기록물을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기록관에서는 구세대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두었다가 열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SAA의 아키비스트들인 Long과 Vogt-O'Connor는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에서 사진기록의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Long(1984)은 “사진기록의 평가요소로 증거가치, 기관연구가치, 연대와 형태, 이관받은 양과 순서, 저작권, 다른 사건과의 관계, 실물가치다”라고 하였다. 사진기록물은 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의해서 생산되는데 이는 곧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진에는 사무실, 캠퍼스

---

24) M. L. Hedstrom, “Archives & Manuscripts: Machine-Readable Record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4, p. 68.

퍼스, 행사 등과 같이 기관의 활동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진 기록물은 조직의 기능과 발전의 증거로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진기록물은 기관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료(史料)이기 때문에 보존기한 책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관의 인테리어 장식, 건물외관, 직원들의 행사 및 일상 등이 기관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다음으로 19세기의 사진기록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에 의한 요소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은판사진, 유리판사진, 광택사진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귀해지며 파손되거나 멸실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가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하였다.

Vogt-O'Connor(1984)는 “사진의 가치로 증거가치, 정보가치, 예술가치, 연합가치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가 비용, 이용자 접근성과 함께 수치화되어 평가비용과 이용비용에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25)</sup> 특히 예술가치는 시각적 형태나 주제의 희귀성과 같이 시청각기록물을 위한 가치이자 미래 이용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한 평가요소이다. 높은 예술적 가치를 가진 시청각기록물은 전시, 출판, 웹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를 가진 시청각기록물은 증거가치와 정보가치가 낮더라도 자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eary(1991)는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로 연대, 주제, 독특성, 식별성, 이관받은 양과 순서, 물리적 상태, 접근성, 생산자의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sup>26)</sup>

시청각기록물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깨지기 쉽고 흠 것이 나기 쉽기 때문에 물리적 상태정도가 훼손되지 않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

25) M. L. Ritzenthaler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SAA Basic Manual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4.

26) W. H. Leary, *Managing Audio-Visual Arch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 106~107.

하였다. 다음으로 주제의 중요성은 특정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청각기록물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선호되며 중요한 주제에 관한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에 있어서 생산자를 확인하는 평가요소가 필요한데 유명한 생산자의 컬렉션은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는 낮은 인지도를 가진 생산자일지라도 시청각기록물의 실물가치까지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Johnson(1993)은 “시청각기록물은 다양하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반 기록물과는 다른 평가요소를 지녀야 하는데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관련된 4가지 요소이다”라고 하였다. Johnson이 제시한 평가요소는 평가 진행과 이용에 관한 비용, 보존 및 보관비용을 제시하였다.<sup>27)</sup> 희귀한 형태를 가진 시청각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존비용과 보관비용이 들게 되는 데 시청각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및 보존비용에 관한 평가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Charbonneau(2005)는 “사진기록의 평가요소로 매체 정보의 시각적 명료성과 매체의 질, 이용자의 요구, 주제, 사진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도, 설명자료, 매체의 독특성 및 특이성, 연대, 사진사의 예술과 과학 측면에 있어서의 미적인 질과 중요성, 접근제한이다”라고 하였다.<sup>28)</sup> 매체 정보의 명료성은 실물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의 경우 포커스가 맞지 않아 흐릿하고 조리개로부터 빛이 노출되어 실물의 정확성이 떨어져 알아볼 수가 없게 되면 실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존기한을 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음으로 기록관의 수집정책이 명확해야 이용자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기록물의 보존기한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기록관의 이용자들의 단순 재미

---

27) Steve Johnson, *Appraisal of Audiovisual Materials*, Behavioral Images Inc, 1993, pp. 5~6.

28) N. Charbonneau,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Archivaria* 59, 2005.



와 흥미만을 가지고 사진기록물의 보존기한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진기록물의 주제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진기록물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평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진기록물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을 확인요소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개인인지 그룹인지, 대리인인지 그룹인지, 일반인인지 사진전문가인지, 수집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진기록물에 첨부된 설명자료는 보존기한을 정할 때 유용하다. 사진기록물의 설명자료에는 안내서 및 매뉴얼 등이 있는 데, 여기에는 제목, 목적, 생산날짜, 범위와 맥락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존기한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예술성과 과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미적인 질과 중요성, 접근제한 등의 예술성과 접근제한에 대한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사진기록물의 진본의 주제, 구성, 빛의 관리가 적절한지, 그리고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전시 관람객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희귀본인지가 보존기한을 정하는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의 모든 내용은 아래의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선행연구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정리

연구자	평가요소
Schuursma(1974)	데이터구성요소(출처, 정체성, 정리, 이용자접근, 완전성), 설명자료, 주제, 부가정보, 편집본, 편집 완성도
Kula(1983)	설명자료, 기관 목적, 생산자의견, 예술성, 형태, 평가비용
Peterson(1984)	물리적 안정성, 장기간 실행가능성, 매체이전여부, 기술적노후화
Hedstrom(1984)	세대
Long(1984)	증거가치, 기관연구가치, 연대, 형태, 양, 이관받은 양과 순서, 저작권, 실물가치, 다른 사건과의 관계
Vogt-O'connor(1984)	증거가치, 정보가치, 예술가치, 연합가치, 평가비용, 이용비용, 이용적측면(접근성)

Leary(1991)	연대, 주제, 독특성, 식별성, 이관받은 양과 순서, 물리적상태, 생산자의도
Johnson(1993)	평가진행비용, 보존처리비용, 보관비용, 이용에 관한 비용
Charbonneau(2005)	시각적 명료성, 매체의 질, 이용자요구, 주제, 생산의도, 설명자료, 독특성, 매체의 특이성, 미적인질, 접근제한, 연대

### 3.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설계

#### 1)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 도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위해 상위단계, 하위단계로 나누었다. 하위단계는 평가요소, 그리고 상위단계는 평가영역이라고 명하였다. 하위단계의 평가요소는 상위단계 평가영역에 포함되는 세부요소를 의미한다. 26개의 평가요소들은 일반기록물 평가에 관한 연구나 시청각기록물 평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도출된 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각 용어는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정의하였다.

〈표 3〉 시청각기록물 평가에 관한 연구자별 평가요소

평가요소	A*	B	C	D	E	F	G	H	I
식별성	정체성	설명자료				증거가치	식별성		설명자료
출처·관련이력	출처								
기관관계성		기관목적			기관연구가치				

생산관 계자		생산자 의견					생산자 의도		생산 의도
원질서	정리				이관받은 양과순서		이관받은 양과순서		
완전성	설명자료 완전성								
주제	주제				정보가치	정보가치	주제		주제
부가 정보	부가정보								
이형 사본	편집본								
완성도	편집 완성도								
세대				세대					
연대					연대		연대		연대
예술성		예술성			실물가치	예술가치			미적 인질
연계성					다른사건 과의관계	연합가치			
시각 언어									시각적 명료성
형태		형태			형태		독특성		독특성
물리적 상태			물리적 안정성				물리적 상태		매체의 특이성
장기 보존성			매체이전, 장기간실 행가능성						
기관 내 이용성									이용자 요구
기관 외 이용성									이용자 요구
이용 제한	이용자 접근					이용적측 면접근성			접근 제한

저작권					저작권				
평가 비용		평가 비용				평가비용		평가진 행비용	
보존처 리비용								보존 처리	
보관 비용								보관 비용	
이용 비용						이용비용		이용 비용	

\* A: Schuursma(1974), B: Kula(1983), C: Peterson(1984) D: Hedstrom(1984)  
 E: Long(1984), F: Vogt-O'Connor(1984), G: Leary(1991) H: Johnson(1993)  
 I: Charbonneau(2005)

상위단계 평가영역은 선행연구 중에 시청각기록물 평가에 관한연구 (Schuursma, 1974 ; Kula, 1983 ; Peterson, 1984 ; Hedstrom, 1984 ; Long, 1984; Vogt-O'connor, 1984 ; Leary, 1991 ; Johnson, 1993 ; Charbonneau, 2005)에서 제시된 시청각기록물에 관련한 모든 평가요소를 특징, 성질에 따라 연구자가 그룹화 시켜 진행하였다. 그룹화된 평가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영역

영역구분	설 명
맥락영역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배경 및 기술적 맥락을 평가
정보영역	시청각기록물의 정보내용 및 중요성 및 질을 평가
실물영역	시청각기록물의 실물가치 및 예술성을 평가
상태영역	시청각기록물의 외형적 훼손 및 형태를 평가
이용영역	시청각기록물의 이용성과 이용제한을 평가
비용영역	시청각기록물의 평가·보존·보관·이용비용을 평가

<맥락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의 진본성을 비롯한 생산 및 기술적 맥락

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조직에서 시청각기록물은 일반기록물의 첨부물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다. 체계적인 구조와 절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시청각기록물은 메타데이터의 설명 부족으로 평가업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된 배경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 시청각기록물의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증거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평가 시 점검해야 하는 요소이다.

〈정보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정보의 중요성 및 완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기록물의 주제나 정보의 중요성은 기록물평가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목적이나 수집정책에 맞춰서 관련된다. 시청각기록물은 주제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별개로 기록되어 있는 부가정보도 분석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실물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의 희귀성과 예술성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역사적 가치와 미적가치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시청각기록물은 이미지 및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증거나 정보와 상관없이 물리적인 원형 자체나 실물의 희귀성 또는 예술성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시청각기록의 물리적 특성과 지적 특성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상태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의 외형적 훼손이나 재질을 살펴봄으로써 보존대상으로 적합한지 살펴보는 영역이다. 시청각기록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 매체의 특성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외형적 훼손을 입기 쉽다. 외형적 훼손 같은 물리적 상태를 살펴본 후 오염의 흔적이 없고 음성 확인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존가치가 높아지지만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여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보존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매체별 재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형태를

잘 살펴보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청각기록물을 유지·보수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나 매체이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용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의 이용성 및 접근성의 측면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기록관의 최종목적은 기록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과 접근에 관한 평가영역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해당 시청각기록물이 기록관의 내부 및 외부 이용자의 요구와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청각기록물은 출판이나 전시와 같은 재생산의 가능성이 높은 기록물이므로 저작권과 같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용영역〉은 시청각기록물을 평가, 보관, 보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가·보존·보관·이용비용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시청각기록물의 적절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곧 기록관의 예산과 비용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맥락영역〉, 〈정보영역〉, 〈실물영역〉, 〈상태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의 평가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도출

평가영역	평가요소	설명
맥락영역	식별성	기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가?
	출처·관리이력	출처가 명확하고 관리 이력이 연속적인가?
	원질서	생산자가 처음 만들어 놓은 질서가 존재하는가?
	생산관계자	촬영자/ 이용자/ 후원자/ 기술자 등 생산관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기관 관계성	기관의 구조 및 기능과 관계가 있는가?

	완전성	컬렉션의 완성도가 높은가?
정보영역	주제	업무 기능상 주제가 중요하고 명확한가?
	부가정보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형사본	최종본이 나오기까지의 편집본의 중요도는 높은가?
	완성도	첨부자료의 완성도가 높은가?
실물영역	세대	어느 세대의 기록인가? ** 몇 번째 복사본인가?
	연대	시청각기록물의 연대가 오래되었는가? 시청각기록물의 연대가 특정시대에 해당되는가?
	예술성	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연계성	중요한 개인, 장소, 사건과 연관이 있는가?
상태영역	시각언어	색/노출/초점/톤 등 시각적 요소가 잘 표현되어있는가?
	형태	시청각기록물의 재료/재질/크기/형태가 희소성을 가지는가?
	물리적 상태	물리·화학적인 보존 상태는 괜찮은가?
	장기보존성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가?
이용영역	기관 내 이용성	법적·행정적인 내부이용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기관 외 이용성	현재·잠재적 외부이용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용제한	이용자들에게 접근 제약이 있는가?
	저작권	저작권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가?
비용영역	평가비용	평가비용/이관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보존처리비용	가공비용/보존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보관비용	보관에 필요한 관련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이용비용	시청각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비용은 효율적인가?

\*\*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든 후,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제작할 경우, 원본이 1세대라면 이 사본은 3세대에 해당함.

## 4.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기한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총체적인 평가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계층적 구조를 구성하였다. 도출해낸 각 평가요소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 차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총 26개의 평가요소들의 용어표현의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사전인터뷰는 2011년 9월 14일 지자체 기록연구사 1명과 10월 5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평가업무 담당자 1명과 시청각기록물 수집·관리 담당자 1명을 만나 진행하였다.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는 판단(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의 방법<sup>29)</sup>으로 선정하였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각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조사 집단은 현용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업무에 관한 실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연구사들로 총 127명 중 휴직 및 부재를 제외한 96명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조사 집단은 비현용 기록물을 대상으로 평가업무의 전문적인 경험과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연구사와 시청각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사서 14명을 선정하였다.

---

29) 비확률 표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적합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PASW』, 인간과 복지, 2010, 25~26쪽).



〈표 6〉 AHP 조사 집단의 분류

구분	집단	배포자수***	응답자수	응답율
A	중앙과 지자체	96	51	53%
B	국가기록원	14	11	79%
	계	110	62	56%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1년 4월 회원 명단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규직 기록 연구사는 127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휴직 및 부재자 31명을 제외한 9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 총 14일 동안 AHP 설문지를 총 110명의 조사 대상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총 62부를 전자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io)이 0.1 이상인 설문 8부를 제외한 총 54부의 표본을 분석하여 각 평가요소별 상대적인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표본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AHP 조사 집단의 분류에 따른 표본현황

구분	집단	응답자수	비일관성비율 C.R.>0.1	최종사용 표본수
A	중앙과 지자체	51	7	44
B	국가기록원	11	1	10
	계	62	8	54

데이터 분석은 인적사항 및 평가업무에 관한 부분은 'SPSS 14.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부분은 AHP분석전용 솔루션인 'Expert Choice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AHP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전체 중요도 분석

전체 조사 대상자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 중 평가영역에 속하는 6가지 영역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에 속하는 26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가중치를 나타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전체 조사 대상자의 평가영역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종합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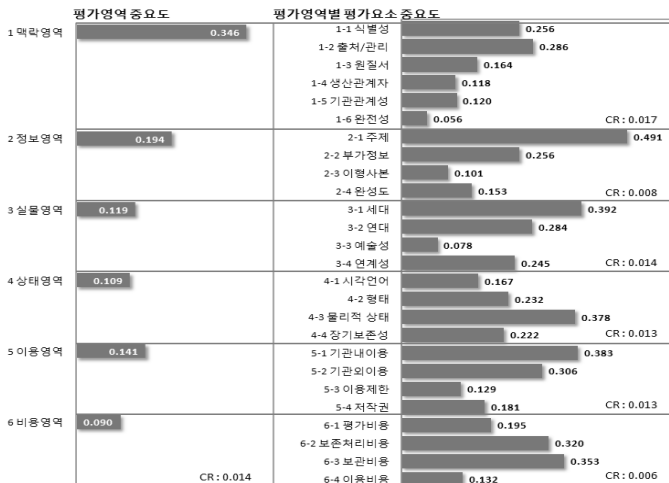
평가영역		중요도	평가영역별 평가요소	중요도	종합가중치	
1	맥락영역	0.304	1-1	식별성	0.242	0.074
			1-2	출처/관리	0.250	0.076
			1-3	원질서	0.137	0.042
			1-4	생산관계자	0.141	0.043
			1-5	기관관계성	0.134	0.041
			1-6	완전성	0.096	0.029
2	정보영역	0.206	2-1	주제	0.490	0.101
			2-2	부가정보	0.204	0.042
			2-3	이형사본	0.113	0.023
			2-4	완성도	0.194	0.040
3	실물영역	0.147	3-1	세대	0.241	0.035
			3-2	연대	0.325	0.048
			3-3	예술성	0.149	0.022
			3-4	연계성	0.285	0.042
4	상태영역	0.145	4-1	시각언어	0.175	0.025
			4-2	형태	0.235	0.034
			4-3	물리적 상태	0.365	0.053
			4-4	장기보존성	0.225	0.033
5	이용영역	0.132	5-1	기관내이용	0.364	0.048
			5-2	기관외이용	0.258	0.034

			5-3	이용제한	0.154	0.020
			5-4	저작권	0.224	0.030
6	비용영역	0.066	6-1	평가비용	0.178	0.012
			6-2	보존처리비용	0.287	0.019
			6-3	보관비용	0.332	0.022
			6-4	이용비용	0.203	0.013

평가영역의 중요도는 평가영역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맥락영역>, <정보영역>, <실물영역>, <상태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평가영역별 평가요소는 평가영역의 하위 단계이므로, 상위 영역인 평가영역을 1로 보았을 때 그에 속한 영역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 집단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들의 중요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체 조사 집단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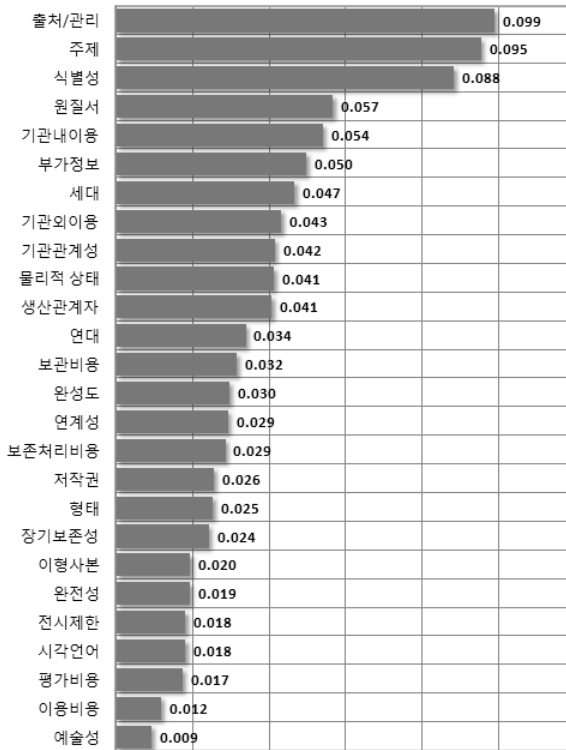


이는 상위 평가영역을 1로 보았을 때 나타낸 중요도이며 각 영역에 부여된 번호는 평가영역-평가영역별 평가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즉, 각 영역의 첫 번째 자리수가 같으면 동일한 평가영역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맥락영역의 평가요소의 경우 1로 시작하는 6가지 평가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각각의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먼저 맥락영역의 평가요소는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생산관계자〉, 〈원질서〉, 〈기관관계성〉, 〈완전성〉 순서대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시청각기록물을 평가할 시 출처가 명확하고 관리이력이 연속적이며, 시청각기록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평가 업무 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영역의 평가요소는 〈주제〉, 〈부가정보〉, 〈완성도〉, 〈이형사본〉의 순서대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시청각기록물이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주제의 중요성을 중요시 여겼고, 다음으로 주제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실물영역의 평가요소로는 〈연대〉, 〈연계성〉, 〈세대〉, 〈예술성〉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된 시기인 연대를 중요시 여겼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과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상태영역의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물리적 상태〉, 〈형태〉, 〈장기보존성〉, 〈시각언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청각기록물의 보존기한을 정할 때에는 보존 상태, 즉 훼손되지 않은 상태와 매체가 가지는 형태의 희소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영역의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기관 내 이용성〉, 〈기관 외 이용성〉, 〈저작권〉, 〈이용제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청각기록물이 공공기관 내에서 업무를 위해 이용되어지거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영역의 평가요소 중요도는 〈보관비용〉, 〈보존처리비용〉, 〈이용비용〉, 〈평가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기록물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관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환경을 중요시 여겼다.

이상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는 종합가중치로 나타낼 수 있다. 종합

가중치란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에 속하는 각각의 평가영역의 중요도와 상위영역의 중요도가 합산되어,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의 중요도를 산출한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를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2> 전체 조사 대상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별 평가요소 종합가중치



위 <그림 2>를 보면, <맥락영역>에 속한 평가요소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영역>에 속한 평가요소들이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를 통해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가 평가영

역의 중요도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요도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으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제〉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주제〉는 〈맥락영역〉보다 낮은 순위인 〈정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소간의 상대적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평가 업무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시청각기록물의 명확한 주제가 보존기한을 정할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AHP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집단별 중요도 분석

#### (1) 조사 집단 간 평가영역 비교 분석 결과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조사 집단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결과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조사 집단 간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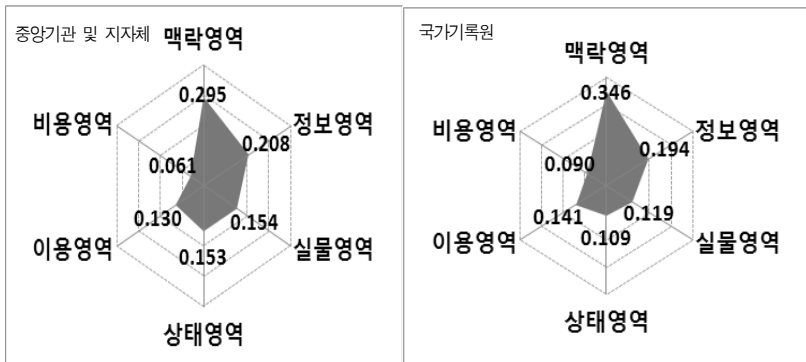
평가영역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맥락영역	0.295	1	0.346	1
정보영역	0.208	2	0.194	2
실물영역	0.154	3	0.119	4
상태영역	0.153	4	0.109	5
이용영역	0.130	5	0.141	3
비용영역	0.061	6	0.090	6
일관성지수	0.010		0.014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맥락영역〉, 〈정보

영역)을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영역들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물영역>과 <상태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 실무자들은 <이용영역>을 다른 영역들보다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진 시청각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데 국가기록원의 기관 특성상 이용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조사 집단별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조사 집단별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2) 조사 집단 간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 분석 결과 앞에서 분석한 조사 집단간 시청각기록물 평가영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이들의 세부요소인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을 평가영역별로 실시하였다.

가. 맥락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의 맥락영역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맥락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식별성	0.239	0.070	2	0.256	0.088	2
출처/관리이력	0.241	0.071	1	0.286	0.099	1
원질서	0.131	0.039	5	0.164	0.057	3
생산관계자	0.146	0.043	3	0.118	0.041	5
기관관계성	0.137	0.040	4	0.120	0.042	4
완전성	0.106	0.031	6	0.056	0.019	6
일관성지수	0.011			0.014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맥락영역>에서 <출처/관리이력>과 <식별성> 요소를 다른 평가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록학의 연구자 Bearman과 의견과 일치하는 데,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출처에 대한 중요성 분석에 의하여 보존기한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업무에서 출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쉘렌버그가 말한 1차적 가치의 중요성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정보적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동시에 평가업무를 보다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sup>30)</sup> 다음으로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생산관계자>에 관한 평가요소를 중요시 여겼다. 현용기관의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청각기록물 생산에 관련된 이들의 의도를 중요시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원질서>에 관한 평가요소이었다. 이는 개별 시청각기록물이나 시청각기록물 컬렉션들이 모기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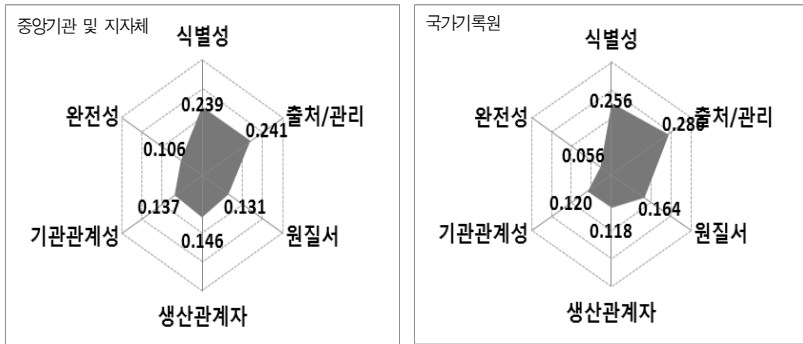
30) D. Bearman, "Archival Strategies", *American Archivist* 58, 1995, pp. 380-413.



이관받기전의 원래 질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서도 유지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다음 <그림 4>는 조사 집단별 맥락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조사 집단별 맥락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나. 정보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의 정보영역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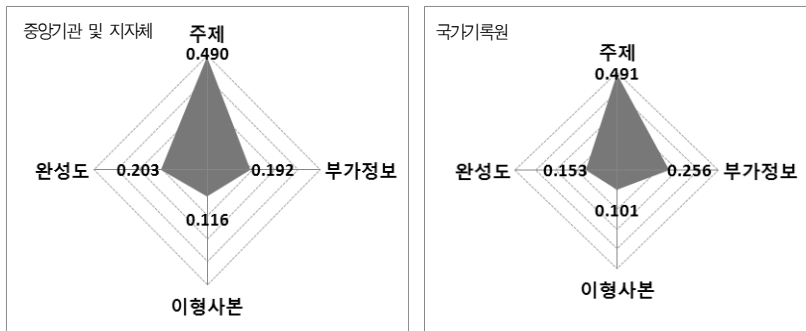
<표 11> 정보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	중양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주제	0.490	0.102	1	0.491	0.095	1
부가정보	0.192	0.040	3	0.256	0.050	2
이형사본	0.116	0.024	4	0.101	0.020	4
완성도	0.203	0.042	2	0.153	0.030	3
일관성지수	0.007			0.008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정보영역>에서 <주제>가 다른 평가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록물이 주는 정보적 가치를 대부분 업무가 가진 주제의 중요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완성도>에 관한 평가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개별 시청각 기록물이나 컬렉션들이 얼마나 완전한 상태로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수집되었는지에 대한 정도가 보존기한을 책정할 시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생산 목적 및 의도와 관계없이 시청각기록물에 포함된 <부가정보>에 관한 평가요소를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특성상 연대가 오래된 시청각기록물들의 평가업무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때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5>는 조사 집단별 정보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5> 조사 집단별 정보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다. 실물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의 실물영역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실물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세대	0.206	0.032	3	0.392	0.047	1
연대	0.334	0.051	1	0.284	0.034	2
예술성	0.166	0.025	4	0.078	0.009	4
연계성	0.294	0.045	2	0.245	0.029	3
일관성지수	0.008			0.014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연대> 평가요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는 <세대> 평가요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연대>가 시청각기록물의 평가 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시청각기록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대적 희귀성이 높아 보존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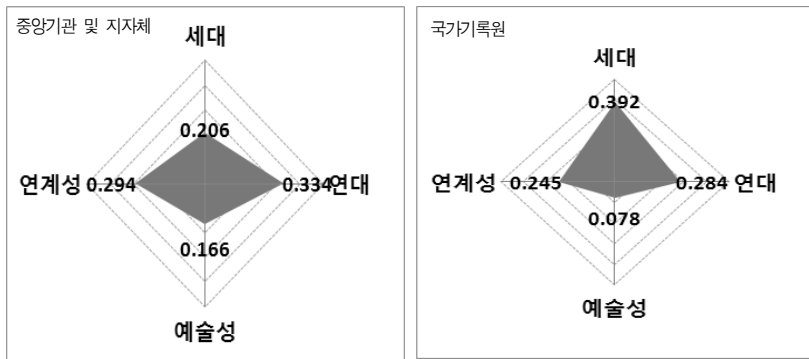
반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영구적인 시청각기록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한 번에 여러 개의 사본으로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청각기록물의 <세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청각기록물의 <세대>는 진본성 또는 유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다음으로는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의 중요한 요소로는 <연계성>, <세대>, <예술성> 순이었고,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연대>

〈연계성〉, 〈예술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성〉에 관한 평가요소는 시청각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지만 공공 기관에서는 미적가치보다는 좀 더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 평가 업무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6〉은 조사 집단별 실물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6〉 조사 집단별 실물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라. 상태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의 상태영역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상태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시각언어	0.176	0.027	4	0.167	0.018	4
형태	0.235	0.036	2	0.232	0.025	2
물리적 상태	0.362	0.055	1	0.378	0.041	1

장기보존성	0.226	0.035	3	0.222	0.024	3
일관성지수	0.008			0.013		

전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의 <상태영역>의 평가요소의 순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물리적 상태> 요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형태>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청각기록물의 물리적 상태가 훼손되었다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며 보존처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형태>는 시청각기록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재질, 크기 등 시청각기록물의 구조와 모양을 가지고 보존기한을 정하는 데, 이는 곧 실물영역의 연대와 마찬가지로 희소가치가 높은 것은 보존기한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그림 7>은 조사 집단별 상태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조사 집단별 상태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마. 이용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의 이용영역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이용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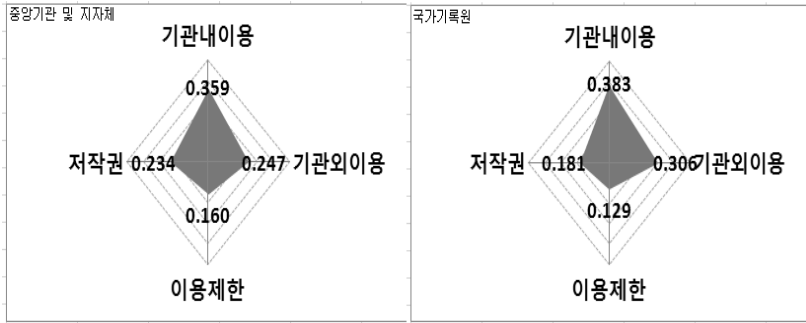
평가요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기관 내 이용	0.359	0.047	1	0.383	0.054	1
기관 외 이용	0.247	0.032	2	0.306	0.043	2
이용제한	0.160	0.021	4	0.129	0.018	4
저작권	0.234	0.030	3	0.181	0.026	3
일관성지수	0.005			0.013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의 <이용영역>의 평가요소의 순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이용성>은 기관 내에서 시청각기록물이 기록물의 생산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 외 이용성>은 시청각기록물을 활용하여 현재 또는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이용하기 위해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단의 순위만 같을 뿐 <표 14>를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의 <기관 외 이용성>이 중앙기관 및 지자체보다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타기관보다 이용자들에게 이용에 대한 목적을 더 중요하게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그림 8>은 조사 집단별 이용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조사 집단별 이용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바. 비용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집단 간의 시청각기록물 비용영역의 평가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비용영역의 평가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요소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중요도	종합 가중치	우선순위
평가비용	0.174	0.011	4	0.195	0.017	3
보존처리비용	0.280	0.017	2	0.320	0.029	2
보관비용	0.328	0.020	1	0.353	0.032	1
이용비용	0.219	0.013	3	0.132	0.012	4
일관성지수	0.007			0.006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비용영역〉에서 〈보관비용〉과 〈보존처리비용〉에 관한 평가요소를 다른 평가요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보관비용〉이 기록관에서 시청각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청각기록물의 특성을 살린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존처리비용> 요소는 시청각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용영역의 요소들은 전체 종합가중치 순위가 낮았는데, 이는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시청각기록물을 평가할 시 비용에 관한 요소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주제가 명확하고 출처와 관리 이력이 정확하고, 상태가 훼손되지 않고, 연대와 형태의 희소성이 있는 평가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9>는 조사 집단별 비용영역 상대적 중요도를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조사 집단별 비용영역 상대적 중요도 방사형 그래프



사.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우선순위 분석 결과

AHP분석을 통하여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결과의 비교 편의를 위해 평가영역별 평가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표 16>으로 나타내었다.



〈표 16〉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 우선순위 비교분석표

순위	중앙기관 및 지자체		국가기록원		전체	
	평가요소	종합 가중치	평가요소	종합 가중치	평가요소	종합 가중치
1	주제	0.102	출처/관리	0.099	주제	0.101
2	출처/관리	0.071	주제	0.095	출처/관리	0.076
3	식별성	0.070	식별성	0.088	식별성	0.074
4	물리적상태	0.055	원질서	0.057	물리적상태	0.053
5	연대	0.051	기관내이용	0.054	기관내이용	0.048
6	기관내이용	0.047	부가정보	0.050	연대	0.048
7	연계성	0.045	세대	0.047	생산관계자	0.043
8	생산관계자	0.043	기관외이용	0.043	연계성	0.042
9	완성도	0.042	기관관계성	0.042	부가정보	0.042
10	기관관계성	0.040	물리적 상태	0.041	원질서	0.042
11	부가정보	0.040	생산관계자	0.041	기관관계성	0.041
12	원질서	0.039	연대	0.034	완성도	0.040
13	형태	0.036	보관비용	0.032	세대	0.035
14	장기보존성	0.035	완성도	0.030	기관외이용	0.034
15	기관외이용	0.032	연계성	0.029	형태	0.034
16	세대	0.032	보존처리비용	0.029	장기보존성	0.033
17	완전성	0.031	저작권	0.026	저작권	0.030
18	저작권	0.030	형태	0.025	완전성	0.029
19	시각언어	0.027	장기보존성	0.024	시각언어	0.025
20	예술성	0.025	이형사본	0.020	이형사본	0.023
21	이형사본	0.024	완전성	0.019	예술성	0.022
22	이용제한	0.021	이용제한	0.018	보관비용	0.022
23	보관비용	0.020	시각언어	0.018	이용제한	0.020
24	보존처리비용	0.017	평가비용	0.017	보존처리비용	0.019
25	이용비용	0.013	이용비용	0.012	이용비용	0.013
26	평가비용	0.011	예술성	0.009	평가비용	0.012

〈표 16〉에서 보면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와 전체 조사 대상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평가요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순위에 포함되는 평가요소 12개 중 10개가 공통요소로 나타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각 조사 집단들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고, 〈출처/관리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각 시청각기록물의 설명이 첨부되어진 자료로 식별이 가능한 〈식별성〉에 관한 평가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각 기관이 현용기록물관리기관인 만큼 시청각기록물의 현재 상태를 중요시 여기며 기관 내 부서에서의 이용률을 중시하고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사람들의 관계와 그들의 의도에 관한 평가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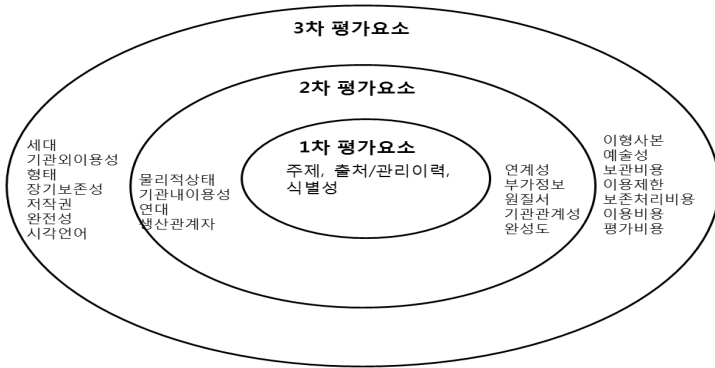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만큼 시청각기록물들이 모기관에서 수집·이관되어져 왔을 때 원래의 질서가 중요시 여기며, 시간이 많이 흘러 몇 번의 복제가 진행되었는지의 세대의 평가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최종적으로 기관 외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간의 높은 순위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는 차이가 없었지만, 순위가 낮아질수록 기관별 특성이 나타나 기관별 인식의 차이가 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에 대한 1차 평가요소, 2차 평가요소, 3차 평가요소로 나누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기준은 앞의 〈표 8〉에서 제시된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3차 평가요소에서 2차 평가요소로 나누는 방법은 총 26개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 평균값이 0.038인데, 각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가 평균값보다 높으면 2차 평가요소, 낮으면 3차 평가요소로 분류하였다. 2차 평가

요소에서 1차 평가요소로 나누는 방법은 미리 나누어진 2차 평가요소 12개 중의 종합가중치 평균값이 0.054인데, 평가요소의 종합가중치가 평균값보다 높으면 1차 평가요소, 낮으면 2차 평가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림 10〉 시청각기록물의 1차, 2차, 3차 평가요소



1차 평가요소는 주제, 출처/관리, 식별성이다. 2차 평가요소는 물리적 상태, 기관내이용, 연대, 생산관계자, 연계성, 부가정보, 원질서, 기관관계성, 완성도이다. 3차 평가요소는 세대, 기관외이용, 형태, 장기보존성, 저작권, 완전성, 시각언어, 이형사본, 예술성, 보관비용, 이용제한, 보존처리비용, 이용비용, 평가비용이다.

여기서 1차 평가요소는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요소만으로 시청각기록물을 평가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2차 평가요소 역시 1차 평가요소보다 덜 중요할 뿐이지 하지 말아야 하는 평가요소가 아니다. 3차 평가요소는 평가업무 시 비중이 높지 않을 뿐이지 하지 말아야 하는 요소는 아니다.

## 5. 결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청각기록물의 특성과 개념, 평가 특수성을 설명한 문헌을 분석하였고, 일반기록물 평가와 시청각기록물 평가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여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를 도출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을 실제로 설계하였는데, 선행 연구자들의 실무를 통해 얻어진 평가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식별성>, <출처/관리이력>, <원질서>를 비롯한 총 26개의 평가요소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각 요소 별 특성에 맞게 정의하여 도출된 요소들을 평가영역으로 범주화시켰다. 그 결과 상위영역으로는 총 6개의 평가영역이 도출되었는데 <맥락영역>, <정보영역>, <실물영역>, <상태영역>, <이용영역>, <비용영역>이다.

전체 설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평가영역의 순위는 <맥락영역>의 중요도가 0.304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평가요소간의 중요도 순위는 종합가중치가 0.101인 <주제>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물리적 상태>, <기관내이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제>는 맥락영역보다 낮은 순위인 정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조사 집단 간을 분석한 결과, 중앙기관 및 지자체 실무자들의 평가영역순위는 중요도가 0.295인 <맥락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요소간의 중요도순위는 종합가중치가 0.102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물리적상태>, <연대>, <기관내이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기관 및 지자체의 실무자들은

각 기관이 현용기록물관리기관인 만큼 시청각기록물의 현재 상태를 중요시 여기며 기관 내 부서에서의 이용률을 중시하고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확인되고 그들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실무자들의 평가영역의 중요도 순위는 중요도가 0.346인 <맥락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평가요소는 종합가중치 0.099인 <출처/관리이력>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제>, <식별성>, <원질서>, <기관내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만큼 시청각기록물이 모기관에서 수집·이관 되어왔을 때 원래의 질서를 중요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대가 많이 흐른 기록물들이 많아 기록물 원형이 변형되거나 조작될 수 있어 기록물의 몇 번째 복사본인지의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기관 외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은 시청각기록물 요소 간 높은 순위의 차이가 없었지만, 순위가 낮아질수록 기관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첫째, 시청각기록물의 유형과 매체 특성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 사진, 동영상 등 세분화된 매체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시청각기록물의 공통점에 근거한 평가요소를 논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에 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것도 의의로 들 수 있다. 중앙기관 및 지자체와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에 관한 상대적인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시청각기록물 평가 기준을 개발할 때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셋째, 기록 평가 기준 도출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들은 대체로 문헌연구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기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해 일반기록물의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5. 4] 제22151호 제19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5. 4] 제22151호 제23조.
- 우수명, 『마우스로 잡는 PASW』, 인간과 복지, 2010.
- 조근태·조용근·강현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사, 2003.
- 최정태, 『기록관리학용어사전』, 한울아카데미, 2005.
- Ham, F. Gerald, *Glossary of Terms Related to the Archiving of Audiovisual Materials*, UNESCO, 2001.
- Leary, William H, *The Archival Appraisal of Photographs :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1985.
- Leary, William H,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Kula, Sam, *Appraising Moving Images*, The Scarecrow Press, Inc, 2003.
- Kula, Sam, *The Archival Appraisal of Moving Image: A Ramp Study with Guidelines*, UNESCO, 1983.
- Schellenberg, T. R, *The Management of Archiv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 Johnson, Steve, *Appraisal of Audiovisual Materials*, Behavioral Images Inc, 1993.

- 천권주·김효민,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3호, 한국기록학회, 2010.
- Bearman, David, “Archival Strategies”, *American Archivist* 58, 1995.
- Boles, Frank,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 Charbonneau, Normand, “The Selection of Photographs”, *Archivaria* 59, 2005.
- Hedstrom, Margaret, “Archives & Manuscripts : Machine-Readable Record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4.
- Pearce-Moses, Richard,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 Terminology”,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 Peterson, T. H, “Archival Principles and Records of the New Technology”, *American Archivist* 47, 1984.
- Ritzenthaler, Mary Lynn, “Archives & Manuscripts: Administration of Photographic Collections(SAA Basic Manual Seri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84.
- Schuursma, Rolf L, “Principles of Selection”, *Photographic Bulletin* 9, 1974.
- Schwartz, Joan M,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s”, *Archivaria* 40, 1995.
- 배은경, 「사진기록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전경선, 「한국 공공기관의 기록물 평가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5.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escribing Archives a Content Standard*, Chicago, 2004.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Audio-visual Records Appraisal Elements

Hong, Deok-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t appraisal elements of audio-visual record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udio-visual records and to take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lements by public institution's archivist and National Archive of Korea's audio-visual specialist thereby to suggest appraisal elements of priority audio-visual records appraisal. Priority of the appraisal elements analysis alternatives for the deducted audio-visual appraisal elements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by public institution's archivist and National Archive of Korea's audio-visual specialist. As the results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context' was decides as the most important appraisal classes, and 'subject' was decides as the most important appraisal elements.

**Key words : Audio-visual, Audio-visual appraisal, Analytic Hierarchy Process**